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33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17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)
 -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-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바,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제출됨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금의 존속기한)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2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2027년 12월 31일 ----- ----- -----.

-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은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설치됨.

설치 당시부터 매년 50억원씩 적립하여 총 570억원(이자포함)을 조성한 뒤, 매년 1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음.

- 동 기금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,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함.

-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1)를 근거로 전년도

1) 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.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. 정부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돛구장의 광고권 수입의 6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이 기금 수입액으로 포함됨.

- 기금의 지출 용도는 ▶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▶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육성 사업▶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육성 사업▶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이며 특히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돛구장의 광고권 수입액을 통한 전입금 중 50%는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²⁾됨.

<야구발전사업 편성 현황>

(단위: 백만원)

2022년도 야구발전 사업		4,528	2023년도 야구발전 사업		4,943
야구장 시설 개·보수	2,920	야구장 시설 개·보수	2,261		
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	350	봉황기 고교야구대회 개최지원	100		
봉황기 고교야구대회 개최지원	100	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	2,378		
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	1,158	학교운동부 육성 지원(야구부)	204		

- 다만 현재의 추세로 운용할 경우, 2025년 연도말 조성액은 519억 2백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(523억 22백만원)이하로 감소가 예상됨.

(단위: 백만원)

	조성액				집행액	조성액과 집행액의 차액	연도말 조성액
	계	전입금	이자수입	기타수입			
2022년도(추정)	9,813	9,057	756	-	11,365	△1,552	54,808
2023년도(추정)	10,258	9,043	1,215	-	10,334	△76	54,732
2024년도(추정)	8,919	7,704	1,215	-	10,334	△1,415	53,317
2025년도(추정)	8,919	7,704	1,215	-	10,334	△1,415	51,902

2) 제8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③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돛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전입금 중 50%는 제4조제6호의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.

- 「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 조례」 제8조제2항 ‘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’ 는 규정에 따라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기금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한 기금 운용을 위해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기금 사업 지원정책 방향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음.
-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과 시민생활체육진흥 등 일반예산안으로 편성되지 못한 긴급 지원사업을 의회동의 없이 20% 이내의 예산에서 탄력적으로 지출이 가능하며,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용중인 바, 동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